

결혼준비자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생활법령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준비자]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으려면 결혼의 성립요건(결혼 의사 합치, 결혼 적령, 혼인신고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결혼 중의 재산관계에 대해 약정하려면 혼인신고 전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는 혼례비 용자, 공공예식장 대관 등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과 같은 신혼부부 전용 주거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예식장 이용 계약 등을 하거나 가전 및 가구 등을 구매할 때는 청약 철회 기간 등 계약 내용과 손해배상 기준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준비자	1
1. 결혼 알아보기	4
1.1. 결혼	4
1.1.1. 결혼의 성립요건 및 효과	4
1.1.2. 결혼의 무효·취소	6
1.2. 약혼	8
1.2.1. 약혼의 성립요건 및 효과	8
1.2.2. 파혼	9
2. 결혼 준비하기	11
2.1. 결혼 자금 마련하기	11
2.1.1. 혼례비 용자 사업	11
2.1.2. 그 밖의 결혼 지원 사업	12
2.2. 신혼집 구하기	14
2.2.1. 주거 및 금융 지원 제도	14
2.2.2. 신혼집 계약	16
2.3. 결혼식 및 신혼여행 준비하기	18
2.3.1.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18
2.3.2. 예식장 이용 계약	20
2.3.3. 신혼여행계약	24
2.4. 혼수 마련하기	26
2.4.1. 가구 구매	26
2.4.2. 가전제품 구매	29
3. 결혼 준비 마치기	32
3.1. 재산 약정하기	32
3.1.1. 부부재산약정등기	32
3.2. 혼인신고하기	33
3.2.1. 혼인신고	33

1. 결혼 알아보기

1.1. 결혼

1.1.1. 결혼의 성립요건 및 효과

결혼의 성립요건

결혼 의사가 합치할 것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 합의가 없다면 그 결혼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15조제1호).

결혼 적령에 이를 것

18세가 된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적령에 도달했더라도 미성년자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7조 및 제808조제1항).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거나 미성년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결혼한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7조, 제808조제1항 및 제817조).

다만,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결혼을 했더라도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8조제1항 및 제819조).

근친혼이 아닐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이에서는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9조).

1.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인 경우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경우
3.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경우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경우

위 1.의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이며, 2.와 3.의 경우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5조제2호, 제816조제1호 및 제817조).

다만, 근친혼을 했더라도 그 당사자 간에 결혼 중 임신을 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0조).

중혼이 아닐 것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결혼하는 “중혼”은 금지됩니다(「민법」 제810조).

중혼을 한 경우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8조).

혼인신고를 할 것

찾기 쉬운 생활법령

결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 812조제1항).

결혼의 일반적 효과

친족관계 발생

결혼을 하면 “배우자”라는 친족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합니다(「민법」 제767조).

또한, 배우자의 친족과 인척관계를 맺게 되는데,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769조).

인척관계는 결혼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해 종료됩니다(「민법」 제775조제1항).

또한,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775조제2항).

부부간 동거·부양·협조의무 발생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민법」 제826조제1항 본문).

배우자가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1)].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결혼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봅니다(「민법」 제826조의2). 따라서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민법」상의 행위능력만 인정될 뿐 「공직선거법」,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국세기본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됩니다.

일상가사대리권 발생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대해 서로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7조제1항).

“일상의 가사”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하며, 부동산 처분 등 일상의 가사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배우자를 대리하려면 별도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861 판결](#) 참조).

결혼의 재산상 효과

부부별산제

「민법」은 부부 각자가 그 특유재산을 관리·사용·수익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민법」 제 831조 참조).

결혼을 하면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이 되고,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30조).

결혼 당사자는 결혼 성립 전에 미리 결혼 중의 재산관계에 대해 따로 약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

찾기 쉬운 생활법령

829조제1항) .

이 경우 결혼 성립 전까지 약정 내용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9조제4항) .

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본문) .

다만, 제3자에게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했다면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832조 단서) .

생활비용 공동부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민법」 제833조) .

생활비용의 부담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1)] .

1.1.2. 결혼의 무효·취소

결혼의 무효

결혼 무효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입니다(「민법」 제809조제1항 및 제815조) .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결혼 무효 방법(혼인무효소송)

결혼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대방이 되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상대방이 됩니다. 만약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

혼인무효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1) 및 제50조제1항 참조] .

결혼 무효 효과

찾기 쉬운 생활법령

결혼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민법」 제855조제1항 참조).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이 무효가 됐다면 상대방은 이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1항·제2항 및 제825조).

결혼의 취소

결혼 취소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민법」 제807조)

미성년자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민법」 제808조)

※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는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9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민법」 제809조제2항)

※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0조).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민법」 제809조제3항)

※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0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결혼한 경우(「민법」 제810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상대방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2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3조).

결혼 취소 방법(혼인취소소송)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817조 및 제818조).

구분	취소청구권자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에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결혼한 경우	당사자,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검사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대방이 되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상대방이 됩니다. 만약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2) 및 제50조제1항 참조].

결혼 취소 효과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고,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됩니다(「민법」 제824조 참조).

결혼이 취소되면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775조제1항).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이 취소됐다면 상대방은 이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1항·제2항 및 제825조).

1.2. 약혼

1.2.1. 약혼의 성립요건 및 효과

약혼의 성립요건

약혼 의사가 합치할 것

약혼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서,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약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약혼 의사가 합치해야 합니다.

약혼 연령에 이를 것

18세가 된 사람은 약혼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0조 및 제801조 참조).

찾기 쉬운 생활법령

다만, 약혼 연령에 도달했다라도 미성년자가 약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1조 및 제808조제1항 참조).

약혼 장애사유가 없을 것

근친혼은 결혼 무효 사유이므로 근친 간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15조제2호 참조).

중혼은 결혼 취소 사유이므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16조제1호 참조).

약혼의 효과

결혼 의무 부담

약혼 당사자는 결혼을 성립시킬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803조).

다만,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약혼이 해제됐다면 상대방은 이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1항 및 제2항).

신분관계 미변동

약혼만으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767조 및 제777조 참조).

따라서 약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지만, 이후 결혼을 하면 결혼 중에 태어난 아이와 같은 법률상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민법」 제855조제2항 참조).

1.2.2. 파혼

※ 법령에서는 파혼을 “약혼해제” 라고 규정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파혼의 사유 및 방법

약혼 해제 사유

당사자 한쪽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4조).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 해제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민법」 제805조 본문).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805조 단서).

파혼의 효과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약혼이 해제됐다면 상대방은 이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1항 및 제2항).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1) 및 제50조제1항 참조].

※ 약혼예물반환청구권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참조).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됐다면 약혼의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 참조).

2. 결혼 준비하기

2.1. 결혼 자금 마련하기

2.1.1. 혼례비 용자 사업

혼례비 용자 신청

“혼례비 용자 사업”이란?

“혼례비 용자 사업”은 정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비용을 낮은 이율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4호 참조).

신청 요건 및 지원 내용

혼례비 용자의 신청 요건 및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제3항,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제4호 및 근로복지넷 홈페이지(<https://welfare.comwel.or.kr/>)-생활안정자금-생활안정자금 용자-사업소개-혼례비 참조].

구분	내용
신청 자격	재직요건: 용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용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일 것 ※ 다만, ①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함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하일 것(일용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부터 3년 이내
융자한도액	1,250만원 범위 내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선택 후 변경 불가,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
이자율	연 1.5%

신청 방법

혼례비 용자 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https://welfare.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넷 홈페이지-생활안정자금-생활안정자금 용자-사업소개-혼례비 참조).

찾기 쉬운 생활법령

신청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자 신청이 제한됩니다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생활안정자금-생활안정자금 용자-사업소개-흔레비 참조) .

이미 용자한도액 (신용보증 한도액) 까지 용자를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한 경우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0조에 의해 용자금이 회수 결정된 경우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용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경우

※ 흔레비 이차보전 용자

위에 따른 흔레비 용자 외에도 용자업무취급기관이 용자금을 용자 대상자에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흔레비 이차 차액 보전 (이하 "이차보전"이라 함) 용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조제24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참조) .

이차보전 지원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1조의2)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중소기업 사업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용자신청일 기준으로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 것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일 것

흔레비 이차보전 용자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4조의2제2항제3호) .

흔레비 이차보전 용자한도액은 최대 2,000만원이며,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2조제3항제3호 및 제13조제3항) .

※ 구체적인 자격 요건 및 필요 서류 등 흔레비 용자 및 이차보전 용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https://welfare.comwel.or.kr/>) -생활안정자금-생활안정자금 용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용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2. 그 밖의 결혼 지원 사업

공공예식장 대관

※ 공공예식장 대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다음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예식장 대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 및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찾기 쉬운 생활법령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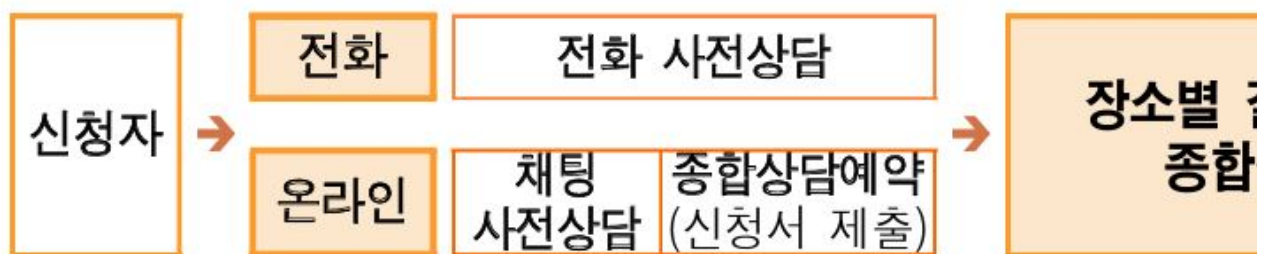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 생활권자(서울 소재 직장인, 대학생, 자영업자 포함), 예비부부의 부 또는 모가 서울시 거주자인 (예비)부부는 서울시 공공예식장을 대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아름다운결혼식 홈페이지 (<https://wedding.seoulwomen.or.kr/>) -사업안내 참조] .

지원 내용

서울시가 지정한 북서울 꿈의숲, 한강공원 물빛무대 등의 공공예식장을 무료 또는 저렴한 대관료만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아름다운결혼식 홈페이지-공공예식장 안내 참조) .

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

서울시 공공예식장 대관 신청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출처: 『서울시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안내서』, 2쪽>

※ 서울시 공공예식장 대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더아름다운결혼식 홈페이지 (<https://wedding.seoulwomen.or.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장려금 지원

※ 결혼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 및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 감소 및 저출산에 대응하고 고비용 결혼문화에 따른 결혼 기피를 개선하기 위해 관내 주소를 둔 부부 등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보조금24 참조] .

지원 내용

결혼장려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결혼장려금’, ‘결혼지원금’, ‘결혼축하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보조금24 참조) .

결혼장려금은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보조금24 참조) .

신청 방법

찾기 쉬운 생활법령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정부24 홈페이지-보조금24 참조).

※ 결혼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보조금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신혼집 구하기

2.2.1. 주거 및 금융 지원 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 유형

신혼부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주택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제4항).

국민주택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20%

민영주택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15%

입주 자격

신혼부부가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4항제1호 참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이 7년 이내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공급 방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급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3항 및 제6항 참조).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
3.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0%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라목2) 및 제4항제1호다목2)].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공공주택 사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1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I 형 및 II 형으로 나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4제1항 참조).

입주 자격

신혼부부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4호 및 제7조의4제1항 참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I 형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II 형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이며, 임대무기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

Q. 예비신혼부부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나요?

A. 네, 입주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예비신혼부부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입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4제1항 및 제7조의4제2항제1호 참조).

여기서 “예비신혼부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5호).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s://www.lh.or.kr/>)-사업소개-주거복지사업-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신혼부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자금 대출

주택 자금 대출

정부는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여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참조).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대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대출상품소개 참조].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전·월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 대출 등

※ 주택 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기금 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대출상품소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2. 신혼집 계약

주택 계약 전 유의사항

부동산등기기록 확인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사항의 확인을 통해 대상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s://www.iros.go.kr/>)에 접속하여 수수료를 내고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참조).

각종 대장 확인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표시 내용이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소유자 등이 기록되어 있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 참조).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건축법」 제38조제1항 참조).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지구 및 개발 계획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 참조).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외에도 지적공부 등의 내용까지 함께 확인하려면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부동산종합공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부동산 매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계약 시 유의사항

계약 당사자 확인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시 상대방이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마이홈 포털 (<https://www.myhome.go.kr/>) -정보마당-부동산정보 참조].

찾기 쉬운 생활법령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통해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마이홈 포털-정보마당-부동산정보 참조) .

계약서 작성 및 대금 지급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중도금, 잔금 등 대금 지급 시 대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주고받아야 하며, 대금 지급 기일 직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한 번 발급받아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와 변함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마이홈 포털-정보마당-부동산정보 참조) .

주택 계약 후 유의사항

주택 매매의 경우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매매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

또한, 계약 당사자가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참조) .

주택 임대차의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통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추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제2항 참조) .

또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 갱신의 경우 제외)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본문

찾기 쉬운 생활법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 부부공동명의등기

신혼집을 매매하거나 임차할 때 부부공동명으로 등기를 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어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264조 참조).

※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부동산매매](#)』, 『[주택임대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 결혼식 및 신혼여행 준비하기

2.3.1.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결혼준비대행서비스”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의미

“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 결혼예정자를 대신해 웨딩드레스·턱시도 대여, 결혼사진 촬영, 메이크업·헤어 세팅 등의 웨딩패키지 상품부터 웨딩홀, 혼수용품 등의 구매 알선에 이르기까지 결혼식과 관련된 서비스의 준비를 대행하는 업종입니다[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 소비자뉴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피해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 참조].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체결

계약 방법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일반판매, 온라인(모바일)거래,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뉴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피해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 참조).

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영업장소가 아닌 결혼박람회장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하고 계약을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9항 참조).

1.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방문판매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1.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3.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업자가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찾기 쉬운 생활법령

결혼준비대행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9항 참조).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1.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계약 시 유의사항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뉴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피해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 참조).

계약 시 상품 내용과 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 발생을 대비해 계약서 및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결혼박람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결혼박람회 개최 장소가 해당 업체의 사업장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정당한 계약 해제·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신용카드사에 알리고 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현금거래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함께 결혼 준비를 해 오던 담당 웨딩플래너가 갑작스럽게 변경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업체 측에서는 약관상 계약금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웨딩플래너는 결혼준비대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고객의 업체 선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웨딩플래너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을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은 계약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호에 따라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업체가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웨딩플래너를 교체한 경우에는 고객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 - 피해구제·분쟁조정-분쟁조정결정사례-“결혼준비대행서비스 웨딩플래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 환불 요구” 참조>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해제 등에 따른 손해배상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결혼준비 대행업).

분쟁유형		해결기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및 손해발생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	계약금 환급 및 총 대행요금의 10% 배상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	손해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	총 대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	기 발생비용 및 잔여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분쟁 해결 방법 등 소비자분쟁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2. **예식장 이용 계약**

※ 다음의 내용은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서 당사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식장 이용 계약 체결

약관 설명 의무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사무실 내의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내역별 금액)을 게시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관의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2조제1항).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2통을 마련하여 사업자와 예식장을 이용하는 예식당사자(이하 “이용자”라 함)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후에 1통을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2조제2항).

사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의 이름

이용일시 및 이용시간

이용호실

예식비용(예식장, 부대시설, 부대서비스, 부대물품 등 내역별 이용요금)

계약금

그 밖에 예식에 대해 필요한 사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계약금 및 잔금 지급

계약금은 예식비용의 10% 이하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3조제1항).

이용자는 예식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예식비용의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3조제2항 본문).

부대시설 등 이용 강제 금지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식당, 신랑 정장, 신부 드레스, 신부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등 부대시설·서비스·물품의 이용을 조건으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4조제3항).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예식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분쟁유형 4)].

예식장 이용 계약 해제 등에 따른 손해배상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예식장 이용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6조제2항·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분쟁유형 1) 및 2) 참조].

분쟁유형		해결기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예식예정일부터 15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예식예정일부터 6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예식예정일부터 3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예식일부터 29일전 이후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70% 배상
	예식일부터 9일전 이후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70% 배상
	예식 당일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70% 배상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예식예정일부터 15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다만,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후 계약해제 시 ① 계약체결 후 제공된 재화·서비스에 한정해 ② 사전에 서면으로 구체적 항목과 금액을 명시해 고지하고 ③ 소비자가 동의한 계약추진비 공제 가능)
	예식예정일부터 6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예식예정일부터 3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예식일부터 29일전 이후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40% 배상
	예식일부터 9일전 이후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50% 배상
	예식 당일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70% 배상

이용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분쟁유형 3)].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계약 해제 등에 따른 손해배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예식장 이용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분쟁유형 7)].

분쟁유형		해결기준
예식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예식계약 체결 이후 예식 예정지역,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
	계약 해제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불
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 이용·입장인원 제한 등)·시설 일부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불 및 위약금 40% 감경
예식계약 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불 및 위약금 20% 감경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계약 체결 이후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에 대해 이미 이행한 계약 내용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입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환불하고, 공제금액이 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분쟁유형 7)] .

예식사진 관련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이용자가 의뢰한 예식사진이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멸실되거나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8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분쟁유형 6)] .

이용자가 주요사진의 전부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 당초 예식장 이용 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을 이용자에게 지급(재촬영요금은 사업자가 부담)

이용자가 주요사진의 일부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 당초 예식장 이용 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의 배액을 이용자에게 지급(재촬영요금은 사업자가 부담)

이용자가 주요사진의 재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당초 예식장 이용 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의 3배액을 이용자에게 지급

※ “주요사진”이란 주례 사진, 신랑·신부 양인 사진, 신부 독사진, 양가부모 사진, 가족 사진, 친구 사진을 말합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8조제2항 참조) .

예식장 물품 분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물건이 멸실·훼손되거나 도난당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멸실·훼손 또는 도난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 제152조제1항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1조제1항) .

또한,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이 보관을 맡기지 않은 물건이라도 사업자나 종업원의 고의·과실로 인해 멸실·훼손 또는 도난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제2항 및 「예식장이용

찾기 쉬운 생활법령

표준약관」 제11조제2항).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의 물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게시했더라도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52조제3항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1조제3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분쟁 해결 방법 등 소비자분쟁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3. 신혼여행계약

※ 다음의 내용은 「[국내여행 표준약관](#)」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서 당사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여행계약 체결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여행업자는 여행계약 체결 시 여행자에게 해당 여행지에 대한 다음의 안전정보(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 포함)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하는 국가 목록 및 이에 따른 벌칙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긴급연락처 포함)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에 관한 안내

계약서 등 서류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계약 체결 시 여행자에게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 포함)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14조제2항).

여행 일정 변경 제한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에 명시된 숙박, 항공 등 여행 일정(선택관광 일정 포함)을 변경하려면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여행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14조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2항).

다만,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전에 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 변경 동의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14조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4항 본문).

여행 조건 변경 제한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 조건은 다음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0조제1항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1항).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가 요청하거나 현지사정에 따라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국외여행의 경우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효과가 있는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국내여행 표준약관」 제5조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5조).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여행계약 해제 등에 따른 손해배상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8호에 따라 배상합니다(「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3조제1항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제1항).

다만,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3조제2항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제2항 참조).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정해진 기일 내에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별도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4조제1항·제2항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7조제1항·제2항 참조).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674조의4제1항,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5조제1항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8조제1항).

위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74조의4제2항,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5조제2항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8조제2항).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4조의7제1항,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5조제4항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8조제4항 참조).

위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74조의7제2항,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5조제5항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8조제5항).

※ 여행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의 기준 등 국내외여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내여행자](#)』 및 『

[해외여행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 혼수 마련하기

2.4.1. 가구 구매

가구 구매 시 확인사항

할부 구매 시 청약 철회 기간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다음의 기간보다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1.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2. ①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②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③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1.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4.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 “할부계약”이란?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에 관한 다음의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직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이를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

간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 등)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이를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

온라인 구매 시 청약 철회 기간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①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않은 경우, ②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③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1.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찾기 쉬운 생활법령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 철회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가구 구매 시 피해유형별 배상기준

가구 제조 또는 인도 시 흠집이 생긴 경우

가구를 인도받은 후에 흠집이 발견됐다면 구입일부터 15일 이내에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의 인도 시에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제품 교환이 가능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ㄱ. 제5호 가구 분쟁유형 12)].

가구의 품질이 불량한 경우

가구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ㄱ. 제5호 가구 참조).

분쟁유형		해결기준
좀 등 벌레 발생	구입일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구입일부터 2년 이내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
	부품 교환 후 하자 재발생	제품 교환
문짝 휨	구입일부터 6개월 이내 (문짝 길이의 0.5% 이상)	제품 교환
	구입일부터 3년 이내 (문짝 길이의 0.5% 이상)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
	구입일부터 3년 이내 (문짝 길이의 0.5% 이내)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
백화현상 및 도장불량	구입일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구입일부터 6개월 이내	제품 교환
	구입일부터 3년 이내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
	수리 후 동일 하자 발생	제품 교환
장류 등 세트 단위 가구의 색상 차이	구입일부터 1개월 이내	제품 교환 (동일 색상이 없는 경우 구입가 환불)
장류 등 세트 단위 가구의 변색	구입일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구입일부터 1년 이내	제품 교환
악취 등 자극성 냄새 (화학제품 등)	구입일부터 6개월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규격치수허용오차 (± 5mm 이상)		제품 교환
철기가구의 균열, 패각 떨어짐, 패각 변색 등	구입일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구입일부터 1년 이내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
등가구의 균열·뒤틀림 또는 변색	구입일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구입일부터 1년 이내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
침대 품질 불량 (스프링, 매트리스 등)	구입일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구입일부터 1년 이내	부품 교환 및 제품 교환
소파 품질 불량 (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 불량 등)	구입일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구입일부터 1년 이내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
	구입일부터 1년 이후	유상 수리

물품 배달 전 구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찾기 쉬운 생활법령

가구 구매계약 후 제품이 배달되기 전에 구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ㄱ. 제5호 가구 분쟁유형 15)〕.

분쟁유형			해결기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주문제작형 가구	제작 작업 착수 이전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
		제작 작업 착수 이후	실손해배상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	배달 3일 전까지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
		배달 1일 전까지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선금이 물품 대금의 10% 이하인 경우		선금의 배액 환급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분쟁 해결 방법 등 소비자분쟁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2. 가전제품 구매

가전제품 구매 시 확인사항

할부 구매 시 청약 철회 기간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다음의 기간보다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1.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2. ①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②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③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1.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4.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 “할부계약”이란?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에 관한 다음의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직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이를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

간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 등)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이를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

온라인 구매 시 청약 철회 기간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 2. ①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않은 경우, ②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③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1.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 철회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가전제품 구매 시 피해유형별 배상기준

제품 운송 또는 설치 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전제품 구매 후 운송 또는 설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ㄱ. 제5호 전자제품 분쟁유형 6) 및 7)].

분쟁유형	해결기준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제품 교환
사업자가 제품 설치 중 발생한 피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가전제품을 정상적인 상태로 사용하다가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ㄱ. 제5호 전자제품 참조).

분쟁유형		해결기준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
	수리 불가능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찾기 쉬운 생활법령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Ⅰ. 제5호 전자제품 참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분쟁 해결 방법 등 소비자분쟁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결혼 준비 마치고

3.1. 재산 약정하기

3.1.1. 부부재산약정등기

“부부재산 약정”이란?

부부재산 약정

“부부재산 약정”이란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관리 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29조제1항 참조) .

부부재산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9조제4항) .

부부재산약정등기 방법

신청인 및 신청 기간

부부재산약정등기는 결혼 성립 전에 약정자 양쪽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0조 본문 및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제1호가목1)] .

신청 장소

부부재산약정등기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제1호가목2)] .

신청서 기재사항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3조) .

등기의 목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약정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부부재산약정의 내용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등기소의 표시

신청연월일

신청서 첨부서류

찾기 쉬운 생활법령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4조).

부부재산약정서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변경 또는 소멸등기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했다면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제2항 참조).

부부재산약정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약정내용의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한 재판의 등본이나 이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5조제1항).

이 경우 약정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 또는 약정의 내역에 관하여 등기한 사항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종전 등기사항을 전부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뒤 새로운 표시번호 또는 사항번호에 변경 후 사항으로 전부를 다시 기록하게 됩니다(「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5조제2항).

또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한쪽이 부부재산약정의 소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0조 단서).

부부재산약정의 소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6조제1항).

이 경우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소멸등기는 등기기록의 약정자부의 약정자표시를 전부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뒤 등기기록을 폐쇄하게 됩니다([「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6조제2항](#)).

3.2. 혼인신고하기

3.2.1. 혼인신고

혼인신고 방법

신고인 및 신고 기간

혼인은 결혼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그

찾기 쉬운 생활법령

효력이 생기며, 별도로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민법」 제812조제1항 참조).

당사자 중 한쪽만 출석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 당사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그 밖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제2항에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전단).

신고 장소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20조제1항 참조).

만약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4조제1항).

신고서 기재사항

혼인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민법」 제812조제2항).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함께 서명)

신고서 첨부서류

혼인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혼인신고 참조].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동의를 필요한 혼인의 경우 혼인동의서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Q.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대전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혼인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할 수 있고, 신고지의 담당 공무원이 등록사무를 처리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및 제20조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신고 장소의 제한이 없으며 원하는 장소에서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수로 한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혼인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신고서가 수리됐다면 신고인은 잘못이나 그 밖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2조제1항). 따라서 이 경우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면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혼인 무효·취소 소송을 하거나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혼인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가족관계 등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외국인과의 혼인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결혼이민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